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7.

발 의 자 : 신장식 · 김선민 · 황운하
강경숙 · 이기현 · 한창민
이해민 · 서왕진 · 정춘생
차규근 · 백선희 · 김준형
최혁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,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,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).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의 제목 중 “기록의”를 “자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사건의 기록(사건관계인,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,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)의”를 “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,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「민사소송법」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
2. 영업비밀 자료

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,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자료를 송부한 경우에는 사건관계인,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자료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정거래위원회의 기록의 송부 등에 관한 적용례)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0조(<u>기록의</u> 송부 등)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<u>사건의 기록(사건관계인,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,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)의</u>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110조(<u>자료의</u> 송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위반행위 및 손해의</u> <u>증명,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</u> <u>자료의</u>-----. ② <u>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「민사소송법」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1. <u>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</u> 2. <u>영업비밀 자료</u> ③ <u>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</u>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<신 설>

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
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
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
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.
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
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
된다.

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단
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
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, 또는
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
하다고 판단하여 제2항제2호에
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
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
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은 송부
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
있는 범위와 열람할 수 있는
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
따라 법원에 자료를 송부한 경
우에는 사건관계인, 참고인 또
는 감정인에게 법원의 요구에
따라 자료를 송부한 사실 및
송부한 자료의 목록을 통지하
여야 한다.